

게임유저 소송특례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2024년 3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국회의원을 포함한 10인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손해배상 소송의 입증책임과 관련한 특례 조항을 포함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사항들을 간추려보면서 게임산업에서 참고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배경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게임산업법 제33조제2항)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와 관련된 게임 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민법 등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여 권리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특례 조항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도 확인된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소송 지원책보다 게임 유저 보호에 한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실제로 법개정이 이루어질 것인지도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하 주요 내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입증책임의 전환

개정안 제33조의2제1항은 게임물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의 미표시 또는 오표시로 이용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밝히면서, 게임 확률의 특성상 입증에 대한 현저한 어려움의 존재로 그간 권리구제가 쉽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게임물사업자에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나. 손해액 산정 입증 부담 경감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도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동조 제2항), 고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배 범위에서 징벌적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동조 제3항).

다. 피해구제센터운영

또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동조 제5항).

3. 시사점

게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정책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제7회 국무회의에서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하다”며 게임이용자의 집단분산적 피해에 대한 실효성있는 구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민생토론회에서도 전자상거래법상의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과정은, 의회기 종료를 앞두고도 빠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입법 절차보다 신속한 입법이 가능한 의원입법으로서라도 빠른 입법을 이뤄내겠다는 정책 당국의 의지로 읽혀집니다.

의회기 종료 앞두고 있지만 21대 국회의 남은 기간에도 법안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총선이 치러졌던 2012년(18대), 2016년(19대), 2020년(20대)의 경우를 예를 들면, 19대 총선이 치러진 2012년은 4월 총선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5.2 개최되어 총 63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대 총선이 치러진 2016년은 4월 총선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5.19 개최되어 총 129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1대 총선이 치러진 2020년은 4월 총선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4.29, 4.30, 5.20 세차례 개최되어 총 251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22대 총선 이후에도 게임 소비자 보호처럼 정책 당국의 의지가 크고 야당의 이견이 없는 법안은 이른바 민생법안으로 분류되어 막바지 법안처리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으나, 22대 국회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입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김종일

T. (+82) 2 6003 7571

센터장/수석전문위원

E. kmji@yoonyang.com

이광욱

T. (+82) 2 6003 7535

파트너변호사

E. kwlee@yoonyang.com

이근우

T. (+82) 2 6003 7558

파트너변호사

E. klee@yoonyang.com

조준오

T. (+82) 2 6003 7080

파트너변호사

E. jojo@yoonyang.com

정호선

T. (+82) 2 6182 8548

변호사

E. junghs@yoonyang.com

박승민

T. (+82) 2 6003 7090

전문위원

E. psmin@yoonyang.com